



제 439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추가 〉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0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추가(안 제2조제1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염태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3.

다. 회 부 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추가(안 제2조제1호)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 <u>사회적</u>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u>사</u> <u>회적·종교적</u> ----- -----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에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으로 종교적 가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종교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유산체제의 기본법이 되는 현행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호1)에서 “국가유산”을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2)에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을 각각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및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유사 입법례에서 유산 등의 정의를 특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³⁾ 별표1의2⁴⁾는 보편적 가치에 따른 분야별 기준을 명시하면서 종교를 역사적 가치의 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조제1호⁵⁾에서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등록기준 중 하나로 종교를 규정하여 근현대 종교 분야 건축물 및 유물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도 종교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①‘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 중심의 개념으로, ‘종교’라는 특정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문화유산기본법」에서도 문

3)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4) 「문화유산법 시행령」 [별표 1의2]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화유산의 정의에 종교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보편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현행 시행령 상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종교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이미 종교 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존·관리하고 있고, ④다양한 종교적 가치를 평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바, 종교, 종단, 종파 등이 각자의 종교적 가치를 주장할 경우 사회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활용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①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종교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②종교적 가치만을 지닌 문화유산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활용할 필요성이 다소 불분명하고, ③종교적 가치만을 지닌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할 경우 각종 종교단체의 등록 요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④「국가유산기본법」등 유사입법례에서 문화유산 등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부산광역시는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유산법」 제2조에서 문화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에서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법률상 정의는 일반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과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하는바, 「문화유산법」에서 종교는 역사적 가치의 범위내에서 검토되므로 ‘종교적’인 사항은 역사적, 사회적 가치 내에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법무부 (2026.4.10.)	<입법정책적 결정> -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존·활용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종교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종교적 가치만을 지닌 문화유산의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활용할 필요성이 다소 불분명함 - 종교적 가치만을 지닌 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할 경우 각종 종교단체의 등록 요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임 - 또한, 문화유산 등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유사입법례도 고려할 필요.

○ 지자체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2026.4.6.)	<현행유지 필요> -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법인「문화유산법」 제2조 (정의)에서 문화유산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근현대유산법」 제2조(정의)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법률상 정의는 일반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과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함. 「문화유산법」에서 종교는 역사적 가치의 범위내에서 검토됨. '종교적'인 사항은 역사적, 사회적 가치 내에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임. 「문화유산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의2의거, 보편적 가치에 따른 분야별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종교는 '역사적' 가치의 한 분야에 해당함. 「근현대유산법」제2조(정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적'은 가치 기준이기보다 분류와 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수정안에 대한 검토 필요. 「근현대유산법 시행령」 제2조의 등록기준 명시

참고 2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국가유산 기본법 (법률 제20309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